

	<b>지식재산권관리규정</b>	규정번호	4-1-7
		제정일자	2008.07.10.
		개정일자	2011.10.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산학협력단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대학의 교직원이 대학 또는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대학의 시설·설비·인원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4.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그 외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기술적 지식 등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통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지식재산권 및 실시보상 등 관리에 관여하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직무발명의 경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다만, 교직원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교직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승계한다.

② 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수 있다.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하여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 2 장 권리의 소속

제6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발명의 내용설명서(명세서)
3. 선행기술자료 조사서
4. 양도증

②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한 발명인 경우

에는 공동으로 제출한다.

제7조(승계의 결정 및 통지)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결정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발명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 산학협력단장은 제8조에 의거하여 권리를 양도받으면 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 경비의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에 의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 국내외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유지비용 중 일부를 발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발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요건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동명의로 출원할 경우에는 공동출원인에게 제 경비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제11조(출원등의 제한)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특허권의 승계) 교직원이 취득한 특허권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경우 제6조 내지 제7조,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특허권의 유지) 본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관하여 등록 후 5년 이내에 특허권의 계속 보유 여부를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하며, 이후에는 매2년마다 권리의 포기 또는 양도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3 장 심의위원회

제14조(심의위원회) 산학협력단은 발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과 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원 또는 주임급 이상 직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단,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3. 발명의 국제출원 여부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간사) 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서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유지한다.

### 제 4 장 보 상

제19조(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를 본 규정에 따라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출원보상금 : 발명이 출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2. 등록보상금 : 발명이 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3. 실시·처분보상금 : 발명에 대한 권리의 직접실시, 양도 또는 실시허여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② 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발명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 발생한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은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따른다.

③ 발명자가 제 1항의 실시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한 기술료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술이전 관련 비용 및 기술이전 보전비를 순차적으로 공제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기술적 지식의 양도, 전용 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여(許與)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30%, 발명자는 70%로 배분한다.
2.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 지식 및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30%, 발명자는 70%로 배분한다.

제20조(발명자 보상금의 지분)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있어서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서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 발명자가 보상금 지분 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동의를 거쳐 조정된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지급시기)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기준,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제23조(보상금의 불반환) 연구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5 장 기술 실시 계약

제24조(사전협의)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적재산권, 기술적 지식등에 대해 외부 제3자(이하 "실시예정자"라 한다)가 사용, 활용 및 상용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당해 발명자와 함께 동 실시예정자와 접촉하여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정부(공기업 출연포함)의 사업관계 법령 등으로 기술실시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25조(계약체결) 산학협력단에서는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기술료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심의위원회 회의 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제26조(기술료) 기술료 계약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1. 실시권의 종류 : 전용 실시권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수요, 시장규모, 실시조건, 투자연구비의 상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통상 실시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2. 기술료는 계약체결에 따른 선급기술료와 경상기술료(매출액 대비 정율(%) 또는 정액)로 구분한다.
3. 기술료계약은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예정자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실시예정자와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
4. 실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되 타 법령 등의 규정, 제품 또는 기술의 수명, 기술수준, 시장성, 외국기술 비교결과 등을 검토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계약의 변경) 실시자가 자금 영세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기술료를 인하 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8조(계약의 해지) ① 실시자가 산학협력단의 기술자체가 상용화 또는 실용화에 부적격 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 요청하는 경우 실시자의 요구 및 주장사항과 동건에 대한 발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실시자에게 해약을 요구할 수 있다.

1. 실시자가 생산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2. 실시자가 조업을 중단하여 기술실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실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③ 계약해지의 경우 실시자는 사후 연구결과 비밀누설 방지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기술보증 및 배상) 발명자 또는 산학협력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시자와 기술료 계약시, 산학협력단의 기술 수준 이상으로 동 제품의 실용화나 성공적인 활용 및 상품화에 대한 보증 내지 손해배상에 관한 약속이나 예정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6 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30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주도 연구사업 과제 기술료 : 정부주도 연구 사업에 따라 참여기업에 기술 이전하고 이에 대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의 기술료
2. 일반수탁 연구 및 기타 연구사업 과제 기술료: 산업계 수탁연구, 자체 연구 등 상기 1호 이외의 기술료와 관련 없는 경우의 기술료

제31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 수입은 기술료가 발생한 연구과제의 재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정부주도연구과제 :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규정에 따라 사용. 단,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징수된 기술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수탁 및 기타과제에 준하여 사용한다.

2. 일반수탁 연구 및 기타연구과제 :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 보상금 지급, 교직원의 복리증진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등 산학협력단장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② 연구비 재원이 혼합되어 발생한 기술료 수입은 정부주도연구과제, 일반수탁 연구 및 기타 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사용한다.

제32조(사용절차) ① 수입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관련비용, 기술이전 보전비를 공제한 후 제1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② 기술이전 보전비는 관련비용 공제 후 기술료의 20%로 하며, 그 사용 용도는 외부기업·전문가 등에 위탁 의뢰한 경우의 위탁수수료 및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교직원의 기술이전 인센티브로 사용하며, 그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기술료 중 산학협력단 지분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결산 후 기술이전기금으로 적립한다.

## 제 7 장 보 칙

제33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특허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기술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34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및 특허담당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기타의 산업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기타의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